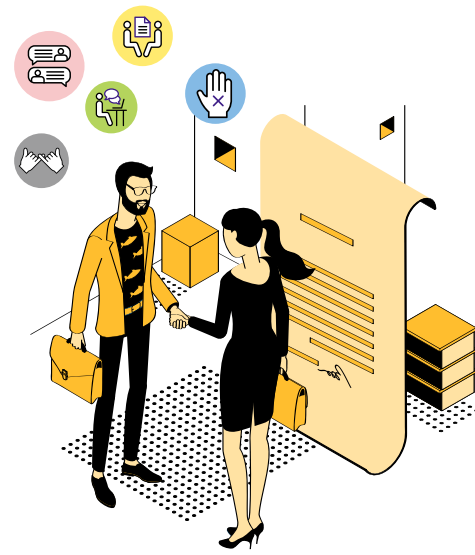


만화 종사자가 알아야 할 표준계약서 실무



만화 종사자가 알아야 할 표준계약서 실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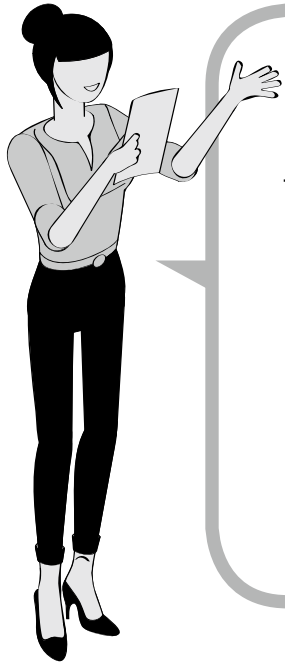


CONTENTS

01. 만화 분야 계약의 이해	04
02. 만화 분야 저작권	14
03.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계약조항	26



01. 만화 분야 계약의 이해



연재 중인 만화를 드라마로 만들겠다는 제안을
외주제작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일단 구두로 승인을 하고,
감독도 결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계약서를 보내주겠다는 말을 한 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감독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감독은 이미 계약도 체결하고 시나리오 작성
비용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여기서 잠깐,

Q. 계약서 작성, 왜 중요할까요?



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확인

- 구두계약 시 내용을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합의 사실을 부인 혹은 다르게 주장하기도 함
- 서면계약서 작성 시 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 가능



분쟁 해결

- 서면계약서를 통해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내용으로 상호 합의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증명함으로써 분쟁의 해결 가능하게 함



서면계약 의무화

- 계약 금액, 계약 기간, 갱신,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자에게 과태료 부과



【 예술인복지법 】

제4조의 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 ①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제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의 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01. 만화 분야 계약의 이해

계약의 성립과 효력



Check Point

계약은 언제 어떻게 성립하는 것일까?

- ▶ 계약이란 "서로 대립되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다.
-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Check Point

모든 계약은 효력이 있는 것일까?

- ▶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두나 거동 등에 의한 계약도 가능하다.
- ▶ 계약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일방의 채무 불이행 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이러한 계약의 일반적인 효력에도 불구하고 만화를 포함한 예술분야 계약의 경우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강행법규

-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
- 공익에 관한 법문

임의법규

-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 예술인 복지법 】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 ①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 ① 만화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만화가 또는 다른 만화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01. 만화 분야 계약의 이해

계약서 작성

계약 체결의 자유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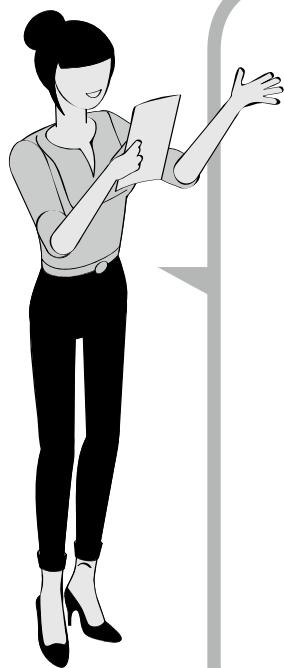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

Check Point

형식이 아닌 내용이 중요하다.

- »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추후에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고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 » 계약 당사자는 소박한 용어를 사용해 원하는 내용을 모두 계약서에 담아놓을 필요가 있으나 형식에 흠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기본적 계약서 형식은 갖추는 것이 좋다.



일주일마다 그 주 분량을 완성하고 대금을 지급 받는 형식으로 외주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 중 “결과물에 대한 이의사항을 통보할 경우,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수정까지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검수기간 및 납품, 작업비 지급은 자동으로 연기됩니다.”라며 피드백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수정을 계속 요구하여 3주째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있고 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도 적혀있지 않고요.



제목

- 제목은 해당 계약서의 성격을 알려주는 기능으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함



형식

- 계약의 목적, 기간, 당사자 권리의무, 계약불이행 시 처리 방안, 손해배상범위, 분쟁발생시 관할 법원 기재 후 날인



목적 조항의 검토

- 계약서의 해석에 관련하여 다툼 발생 시 목적 조항이 계약서 전체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함



계약 당사자의 표시

- 계약 당사자 표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확정하는 의미이므로 잘못 표시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계약서와 간인

- 계약과 다른 내용이 계약서에 삽입되거나 바꿔치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간인을 함이 바람직함



계약용어의 사용

- 특정된 개념을 계약서 내에서 일관된 의미로 사용하고, 쉬우면서도 명확한 용어로 분명하게 표시해야 함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필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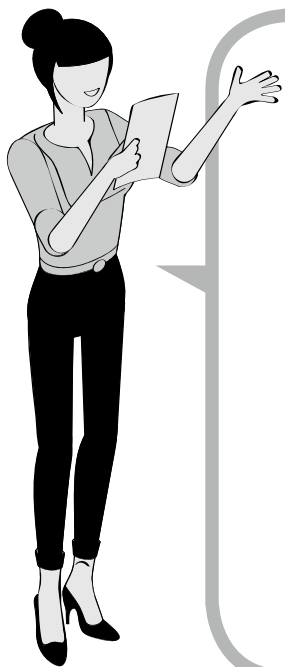
Check list

- 계약 금액
- 계약 기간, 갱신,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Check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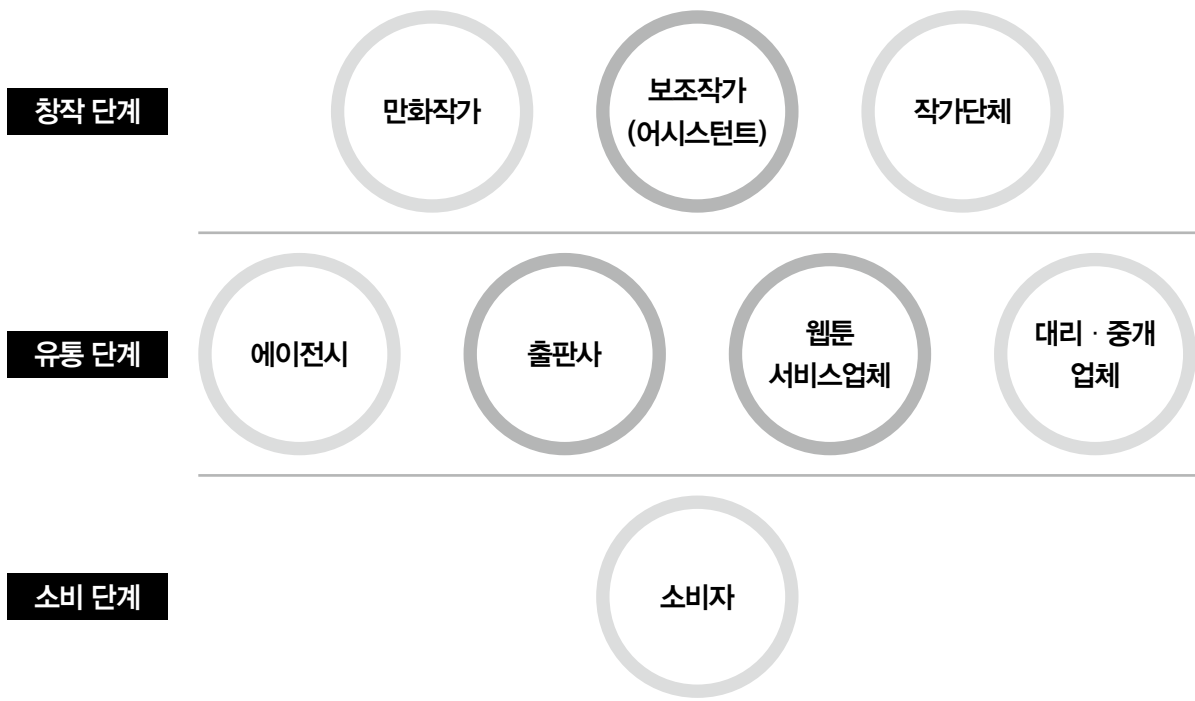
- »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서는 다음의 조항을 서면 계약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1. 만화 분야 계약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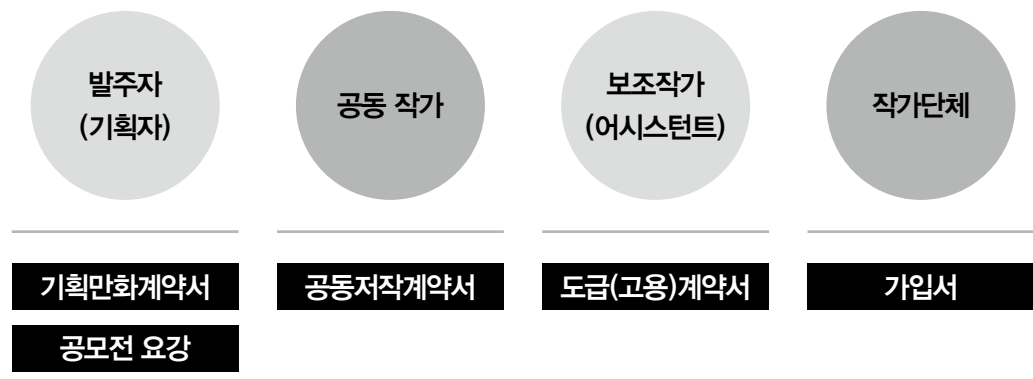
저는 만화작가로 어시스턴트를 구할 생각입니다.
어시스턴트는 출퇴근은 하지 않고 자택근무를 합니다.
보통 펜 터치 어시스턴트는 주당 00컷,
밑 색 어시스턴트는 모든 컷을 채색합니다.
펜터치는 컷당 00원이 기본, 한주 00원 정도 하고
밑 색 어시의 경우 한주에 00만원 정도 합니다.
자택근무 계약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따른다면,
임의로 내용 수정을 해야 할까요?

만화 분야 계약의 당사자



만화작가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

창작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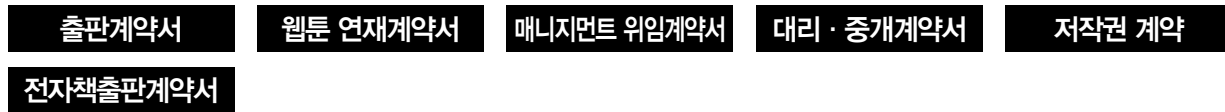


계약의 종류	계약상대방	설명
기획만화계약서	발주자(기획자)	●만화 제작을 의뢰한 자가 작가에게 만화의 내용, 방향, 작화 방식 등을 지시하는 기획만화/ 홍보만화에 적용되는 계약 유형이다.
공모전 요강	발주자(기획자)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을 규정한 공모전 요강의 내용은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공동저작계약서	공동작가	●스토리작가와 작화작가와 같이 2명 이상의 작가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이다.
도급(고용)계약서	보조작가(어시스턴트)	●작가가 공동창작 형태 외에 작품제작 스태프를 고용하여 창작할 때 참여하는 인력과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가입서	작가단체	●단체가 작성하여 작가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약관 형태인 경우가 많다.

01. 만화 분야 계약의 이해

만화작가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

유통 단계



계약의 종류	계약상대방	설명
출판계약서	출판사	● 특정 출판사에 대상 저작물을 출판할 권한을 주는 계약 유형이다.
전자책출판계약서	출판사	● 전자책 출판을 위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계약 유형이다.
웹툰 연재계약서	웹툰서비스업체	● 저작권자와 웹툰서비스업자 간의 계약 유형이다.
매니지먼트 위임계약서	에이전시	● 저작재산권을 에이전시(수임인)에게 양도하는 계약 유형으로 민법상으로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대리/중개계약	대리/중개업체	● 작가가 저작재산권을 대리/중개업체에게 양도하지 않고 저작물 이용계약을 대리/중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 유형으로 통상 작가-대리/중개업체-이용자 간의 3자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권 계약	이용자	● 작가가 만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기 원하는 이용자와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는 특정 산업계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정형화하여 새로운 진입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양식으로서 일종의 견본 계약서 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만화 분야 창작자를 보호하고 창작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발표했고 2019년 개정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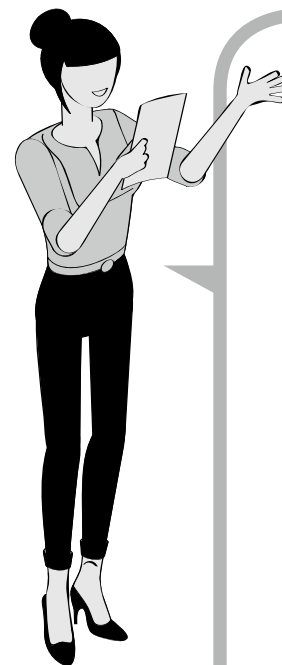
Check Point

-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의무는 아니다.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과 관련하여 예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불균형한 힘을 극복하고, 예술인의 협상력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대로 혹은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고 계약 체결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 표준계약서의 종류는 전형적인 경우를 예상해 임의로 나눈 것이므로 표준계약서에서 다루지 않은 계약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02. 만화 분야 저작권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유형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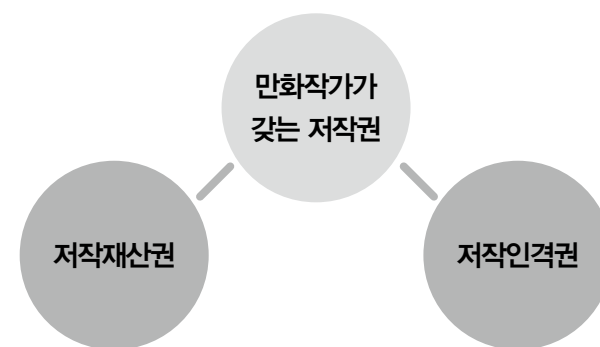
종류	설명
출판권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 관련 계약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 형태로 웹툰 형태의 만화가 주류가 된 현재에도 만화가, 출판사 등 업계 관련자들과 가장 관련이 깊은 계약이다. ● 특정 출판사에게 독점적으로 대상 저작물을 출판할 권한을 주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전자책발행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법은 전자책 출판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종이책 출판과는 별도로 “배타적발행권”이라는 이름의 전자책 출판권을 규정하고 있다.
웹툰 연재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 간의 계약이다. ● 저작권법에는 웹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만화 시장에서의 만화 매체가 기존의 출판물 형태에서 웹툰 형태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웹툰 연재계약은 만화업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계약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모바일 서비스와 일반 웹툰 서비스를 포함한다.
매니지먼트 위임계약서 저작권재산권 위임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매니지먼트에 대한 계약으로 민법상으로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 저작권재산권 자체를 넘기는 계약이 아니라, 저작권재산권 일부의 행사를 위임하는 계약이다.
공동 저작 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의 경우, 스토리 작가와 작화 작가가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2명 이상의 작가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약이다.
기획만화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 제작을 의뢰한 자가 만화의 내용, 방향, 작화 방식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는 것이 기획만화/홍보 만화에 적용되는 계약이다. ●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계약으로 저작권 자체의 보호보다는 만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중점을 둔다.



회사의 새 브랜드 런칭 마케팅으로 웹툰을 연재하기로 계약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웹툰을 기획하여 작업을 하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권유가 있어, 기획한 웹툰에 대해 저작권 양도 요청을 했습니다. 구두로 연재한 웹툰에 대해 제가 00에 개인적으로 연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당해고로 해고 통보와 함께 웹툰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기획한 웹툰 스토리 라인과 캐릭터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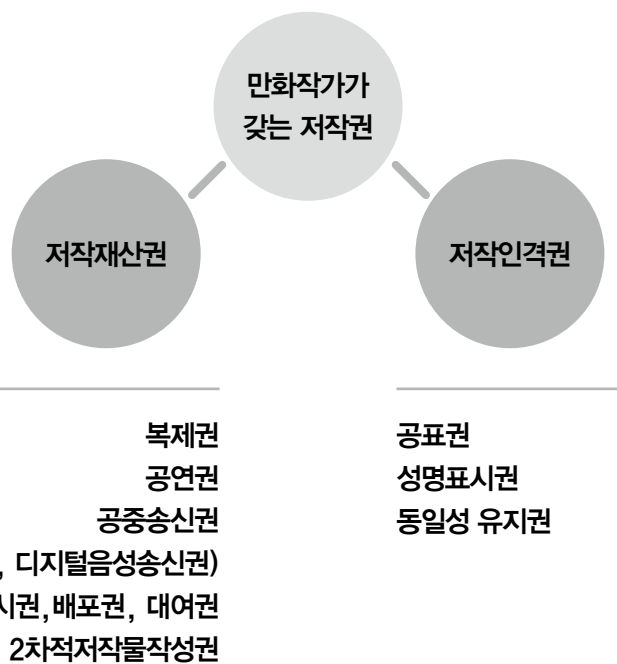
Check Point

- ▶ 작가는 만화의 창작과 함께 만화에 대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권재산권을 보유한다.
- ▶ 별도의 저작권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가가 창작한 만화의 저작권재산권은 저작자인 작가가 가진다.
- ▶ 저작권은 예술가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권리이므로, 계약 체결 시 저작권 조항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02. 만화 분야 저작권

Check Point

- ▶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Check Point

- ▶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인 저작권재산권은 여러 지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권리의 다발'로 저작자는 이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허락할 수 있으며, 이때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된다.
- ▶ 작가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되어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



공표권

-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즉, 저작자가 저작물을 발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자신의 이름(성명이나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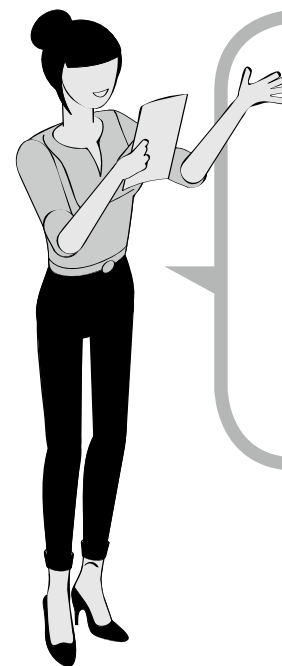


동일성 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 등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즉, 저작자가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하여 저작물의 개량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저작물의 개량은 불가능

Check Point

- ▶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 ▶ 저작자인 만화작가와 분리하여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며, 저작권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재산권에 수반하여 양도되지 않는다.



내가 그린 만화에 A도 공동창작자로 이름을 올리려 합니다.
A는 사실 창작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정상 저도 A를 공동창작자로 표시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02. 만화 분야 저작권

Check Point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이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 송신권)



공연권

•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이나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재생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대여권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대여할 권리



전시권

• 미술, 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

Check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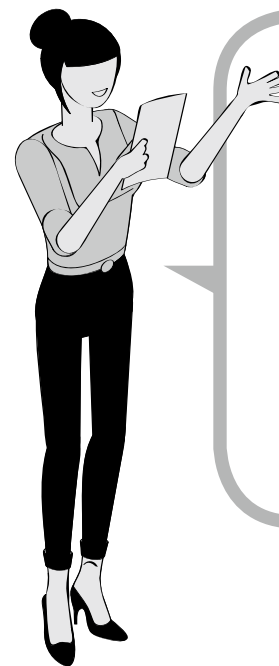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재하며, 양도나 상속이 가능

출판권 설정

-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수 있는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배타적발행권 설정

- 전자책(e-book) 출판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종이책 출판과는 별도로 “배타적 발행권”이라는 이름의 전자책 출판권이 도입되었다.
-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 발행권자는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웹소설을 원작으로 웹툰화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작업할 때 원작, 각색 방향, 기획서 등을 제공받았고 그림 작업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웹툰화를 위해 원작 웹소설을 각색 및 대본화하게 되면 해당 작업에 저작권은 누구에게 발생하나요?

Check Point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뿐 아니라 원저작물의 저작자에게도 허락을 얻어야 한다.

02. 만화 분야 저작권



‘일체의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작가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영화 제작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해 줄 수 없나요?

Check Point

- ▶ 작가는 저작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지분권의 개별적 양도도 가능하고, 지역이나 장소를 한정하거나 기간을 정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 ▶ 저작권격권은 창작예술인에게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저작권을 전부 양도하더라도 작가에게 귀속한다.
- ▶ 저작권 전부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 ▶ 만화의 경우 2차적저작물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저작권 양도 계약 시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출판사와 매절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작권은 출판사에 완전히 양도된 것인가요?



매절계약과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물 이용대가를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 지급하는 형태로서 소위 매절계약은 그 원고료로 일괄 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소명이 없는 한 이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이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1. 선고, 94카합3724 판결

매절계약 체결과 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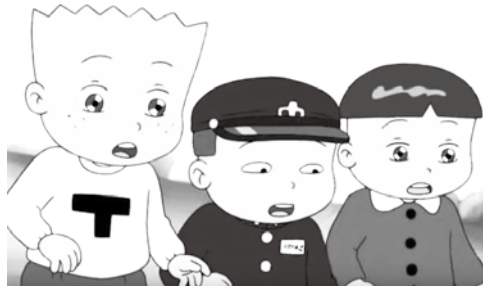
〈구름빵〉 매절계약 이슈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03년 당시 원고가 신인작가였던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저작물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때는 원저작물의 캐릭터의 사용 및 변형이 수반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 사건 저작물과 달리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유보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20. 1. 21. 선고, 2019나2007820 판결

02. 만화 분야 저작권



〈검정고무신〉 OSMU 저작권 분쟁

불공정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근절을 위한 한국만화가협회의 요구

1990년대 한국 만화의 대표작인 〈검정고무신〉은 2006년까지 〈소년챔프〉에 장기 연재된 인기 만화다. 이 만화는 총 45권 단행본으로 완간되었으며, 작품을 토대로 애니메이션, 게임, 카페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2차적저작물 관련 사업까지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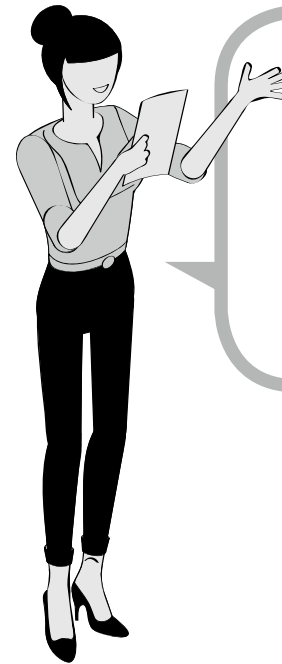
그런데 〈검정고무신〉의 창작자들은 작품의 2차적저작물 관련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작가들에 따르면, 작가들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제작 과정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제작한 〈검정고무신〉 피규어에는 원작자에 대한 표기조차 없었다고 한다. 작가들은 현재 이러한 이유로 위 작품 캐릭터들에 대하여 대표자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한 업체와 분쟁 중에 있다. 위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이나 작가들의 명시적 동의는 없었다는 것이 작가들의 입장이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이번 저작권리 양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위 〈검정고무신〉 사건은 창작자가 보유하게 되는 저작권을 사업화라는 명목 하에 포괄적·배타적으로 양도받아서 행사하는 불공정한 계약관계가 만화계에 여전히 만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창작자들 뿐 아니라, 창작자들과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존중의 관점에서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업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다.

Check Point

지나치게 광범위한 이용허락에 유의해야 한다.

- » 작가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정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 » 웹툰을 이용한 드라마 제작을 허락하더라도 웹 드라마는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 » 출판사, 서비스 업체 등과 체결하는 계약이 독점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계약 이용허락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일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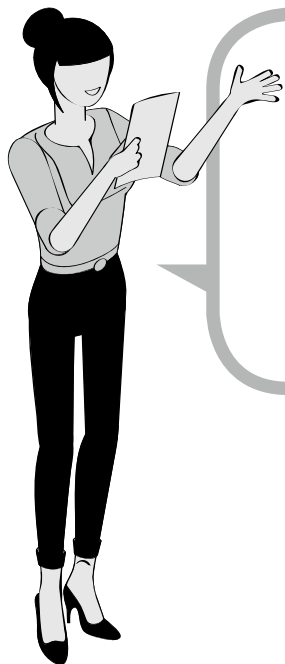


스토리작가와 공동작업을 통해 만화를 제작하였는데, 스토리작가가 제 허락 없이 모바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업체에 허락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화작가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Check Point

-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 » 만화의 경우 스토리작가와 작화 작가가 같이 2명 이상의 작가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동저작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 따라서 크레딧 표기 방식, 저작물에 대한 지분, 수익 분배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02. 만화 분야 저작권



웹툰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상금을 받은 경우
공모전 요강에 나와 있는 대로 저작권 전체가
주최 측에 귀속하나요?

공모전
(광고자)

보통현상광고

- 응모한 모두에게 일정한 상금 지급
- 응모행위가 있으면 계약 성립

응모자

우수현상광고

- 응모한 자 중에 우수작을 선정하여 상금 지급
- 우수작 선정 행위가 있어야 계약 성립

Check Point

공모전 요강의 저작권 관련 조항에 유의해야 한다.

- »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 따라서, 공모전 주최 측이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좋다.



【○○○을 위한 ○○○ 공모전】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은 수상작에 한하여 ____년 동안 ____할 수 있다.
- 향후 ○○○은 필요한 경우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은 동 건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이용할 경우 응모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 ○○○은 수상작 외에 제출된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한다.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한다. 다만,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일 이내에 반환하며, 반환을 위한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응모자가 부담한다.



중국에서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원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웹툰 제작이
불가능한가요?

Check Point

법

- »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03.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계약조항

출판계약

계약 금액(출판계약의 주요 조항)



제15조(출판료 등)

-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출판료의 선금금으로 ____ 원을 저작자에게 지급한다. 이 선금금은 이후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출판료에서 공제한다.
- ② 출판권자는 정가의 ____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 부수를 곱한 금액을 출판료로 저작자의 지정 계좌에 출판물의 첫 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____일까지 지급하고, 발행 부수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출판료 계산서를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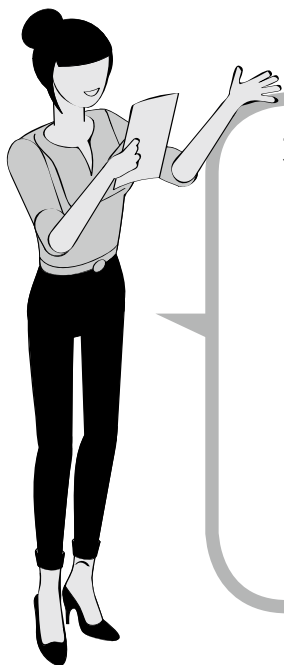
제7조(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 ①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은 출판물의 첫 발행일로부터 ____년간 존속한다.
- ② 저작자 또는 출판권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_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자와 출판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____개월 연장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① 저작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초판 제1쇄본이 아직 모두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 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초판 제1쇄본이 이미 모두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저작자는, 출판권자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출판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출판권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 ⑤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자와 출판권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1. 출판권자는 저작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출판료를 즉시 지급한다.
 2. 출판권자는 저작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자에게 교부한다.
 3. 출판권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출판권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출판권 등록을 말소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자에게 교부한다.
 4.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해지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서 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조항을 보니 "본 저작물의 내용 및 표현에 의한 피해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작가는 업체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작물의 내용 및 표현에 의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까지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불공정한 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해지와 해제

· 법률 효과 측면에서 '해지(解止)'와 '해제(解除)'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함

해지

-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임
- 소급효과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짐

해제

- 해제의 경우에는 소급효과가 있음
- 당사자 일방이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 해제의 소급효를 적용해도 별문제가 없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어 규정해야 함

· 민법은 해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지는 기본적으로 계약에 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해지에 대한 규정은 가능한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03.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계약조항

출판계약

계약 금액(출판계약의 주요 조항)

제22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 ⑥ 저작권자가 출판권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의 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⑦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 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⑧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판계약

출판권의 범위(출판계약의 주요 조항)

제3조(출판권의 설정)

- ① 저작자는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설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4조(출판권의 한계)

- 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
- ②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대한민국의 영토 외의 장소에서 배포, 발행할 수 없다.
- ③ 단, 출판권자는 해외진출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 스토리, 구성요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6조(배타적 권리)

- ① 저작자는 이 계약 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저작자는 이 계약 기간 중 출판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대상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저작자는 이 계약 기간 중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처분, 질권 설정, 대상 저작물이 기록된 도화를 발행할 권리의 양도 등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출판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판계약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4조(계속 출판의 의무)

-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 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복제, 배포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단행본 이외의 연속물(1권 이상~완결권)은 완결작품 전체를 제1항의 대상으로 한다.

출판계약

저작권(출판계약의 주요 조항)

제10조(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출판권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출판권자는 저작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출판권자는 출판물을 홍보함에 있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출판권자가 출판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4항에도 불구하고, 출판권자가 대상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수정을 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자에게 수정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를 한 후 고지범위 내의 수정 또는 편집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가 고지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 ① 이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대상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에게 있다.
-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할 권한은 저작자에게 있다.
- ③ 출판권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설정된 출판권만을 가지며, 그 이외의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03.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계약조항

출판계약

· 용역의 범위(출판계약의 주요 조항)



제8조(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저작권자는 ___년 ___월 ___일까지 완전원고를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발행 등)

- ① 출판권자는 저작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개월 내에 출판물 초판 제1쇄 ___부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중쇄 또는 중판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중쇄 또는 중판 계획을 저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출판권자에게 출판물의 재고가 없을 경우, 저작자는 출판권자에게 출판물의 중쇄 또는 중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중쇄 또는 중판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은 시장 상황, 이 계약의 잔여기간, 출판권자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 당사자 간 서면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⑤ 대상 저작물을 출판물 형태로 제작하는 비용 및 홍보, 판매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전자책 발행계약

· 배타적발행권의 범위(전자책 발행계약의 주요 조항)



제3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 ① 저작자는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발행 등의 권리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 ② 발행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 ③ 저작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 2, 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

- ①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복제 유형 : 온라인 (다운로드 형식) /오프라인 (USB등 유형 매체)
 - 매체 형식 : 전자책, 오디오북 등
 - 이용 형식 : 솔루션/디바이스/플랫폼 등
 - 정가 : 회당 (또는 1set) _____ 원
- ②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권자는 사전에 저작자와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대상 저작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권자가 부담한다.

전자책 발행계약

· 계약 금액(전자책 발행계약의 주요 조항)



제16조(전자책 출판료 등)

- ① 발행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선금금으로 _____원을 저작자에게 지급한다. 이 선금금은 이후 처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에서 공제한다.
- ② 발행권자는 저작자에게 매달 발생하는 매출액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달 ___일까지 전자책 출판료로 저작자의 지정계좌에 지급하고, 매출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전자책 출판료 계산서를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발행권자는 ___개월에 한 번씩 그 동안의 매출 현황을 저작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저작자는 발행권자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 ⑤ 저작자는 발행권자로부터 받은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행권자는 저작자가 이 자료를 자신이 관련된 소송이나 행정 절차 등에서 법원이나 행정청에게 적법하게 제출하는 것은 허용한다.

저작물의 이용 조건 및 방법

-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 유형, 매체 형식, 이용 형식, 정가 등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 대상 저작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 할지를 명시해야 한다.

03.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계약조항

전자책 발행계약

· 배타적발행권의 범위(전자책 발행계약의 주요 조항)



제4조(배타적발행권의 한계)

발행권자는 해외진출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 스토리, 구성요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웹툰 연재계약

· 계약 금액(웹툰 연재계약의 주요 조항)



제9조(연재료, 후기 등 제작료 및 PPL 수익 배분 등)

- ①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매달 00일까지 ____ 원 또는 1편당 ____ 원을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가 합의한 일자에 연재료로 저작권자의 지정 계좌에 지급한다.
- ② 서비스업자가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예고편과 후기 제작, 일러스트레이션 제작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지급할 금전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에 의한다.
- ③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는, 그 수익 방법의 배분 방법을 기재한 별도의 서면 합의에 의해, 대상 저작물에 PPL을 삽입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서면 합의는 PPL을 실시 하는 경우에 다시 체결한다.

웹툰 연재계약

· 계약 기간(웹툰 연재계약의 주요 조항)



제11조(계약기간 및 권리 유지 기간)

- ① 본 계약의 계약 기간(또는 연재 기간)은 __년 __월 __일부터 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종료 시점에 저작물의 연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가 협의 후 확정한다.
- ② 저작권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__개월 연장된다.
- ④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웹툰 연재계약

·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웹툰 연재계약의 주요 조항)



제3조(권리)

- ①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 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의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서비스업자가 대상 저작물을 연재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에 열거한 도메인 네임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 <http://www.webtoon.com>
- ② 저작자는 이 계약 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로 하여금 온라인 서비스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저작자는 서비스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연재 종료(마지막 회 또는 후기 업데이트) 일로부터 __년간 허락한다.
- ④ 대상 저작물의 데이터 보관은 연재 종료일로부터 __년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서비스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저작자에게 교부한다.



웹툰 서비스업체와 연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의 중입니다. 계약서 초안을 받아보았는데, 웹툰 캐릭터에 대한 조항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웹툰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게임 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03.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계약조항

웹툰 연재계약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웹툰 연재계약의 주요 조항)



제10조(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 등에 대한 허락)

- ①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한 권리만을 가지며, 그 외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저작자가 계약 기간 중 제3자로부터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 2차적 저작물 제작, 캐릭터 이용 등의 제안을 받고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__일 이내에 서비스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서비스업자가 이 계약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이 계약서에서 서비스업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권리는 모두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다.

제4조(번역 및 해외진출 등)

서비스업자는 해외진출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 스토리, 구성요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와 협의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플랫폼에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1월 초에 성과가 없다며 2월 말까지 완결시켜 달라고 회사에 연락이 왔습니다. 일방적인 연재 중단 통보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제가 다른 플랫폼으로 작품을 이전하면 작품은 회수할 수 있지만 대신 받은 원고료를 다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플랫폼에 원고료를 전액 다 줘야하나요?



제6조 (연재 중단 금지)

서비스업자와 저작권자는 연재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재 기간 중에 부당하게 저작권자가 제공한 원고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저작물의 연재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비밀유지)

- ①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계약서의 사전 검토, 공공기관 연구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존재하는 공공기관 연구목적으로 개인 정보 및 사업자 정보를 제외한 제공은 제외로 한다.
- ②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서비스업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사이에 「형법」,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저작권법」 등 법률 위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관련 법령에 예정된 절차에 따라 대처하기 위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민사강제집행 등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웹툰 연재계약

용역의 범위(웹툰 연재계약의 주요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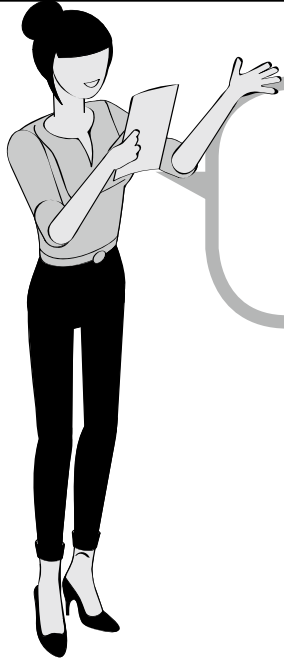
제5조(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 ① 저작권자는 계약 체결 시 연재 원고의 __회 분량을 인도하고 이후 원고는 일정에 따라 연재 __시간 이전에 인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는 서비스업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완전원고의 형태나 내용 등에 대한 서비스업자의 요구사항은 별지 1과 같다.
- ③ 서비스업자는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개월 내에 대상 저작물의 게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연재 종료일은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 간 협의 후 확정된 일자로 한다.

제9조(교정)

대상 저작물의 내용 및 구성요소에 대한 교정은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일 까지 서비스업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자가 요청할 경우 그 교정 책임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03.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계약조항



중국 웹툰 회사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웹툰 연재계약

분쟁해결(웹툰 연재계약의 주요 조항)



제22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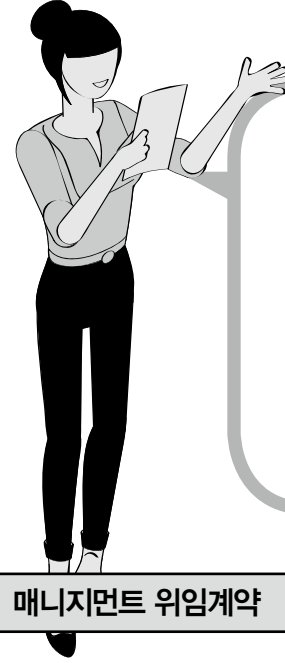
매니지먼트 위임계약

계약 금액(매니지먼트 위임계약의 주요 조항)



제12조(저작권재산권 행사 위임의 대가)

- ① 수임인은 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_____ 원을 계약 후 ___일 이내에 저작자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 ② 본 계약에서 약정한 저작권재산권 사업화에 따른 수익 분배는 별지 2 약정 항목의 세부 합의(대가 지불 규모와 방식 등)에 따른다.
- ③ 저작자는 수임인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저작자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저작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웹툰 매니지먼트 회사와
저작권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보내준 계약서를 보니
쌍방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매니지먼트 위임계약

계약기간(매니지먼트 위임계약의 주요 조항)



제6조(위임의 종료시점)

- ① 이 계약에 따른 위임은 _____에 종료된다.
- ② 저작자와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매니지먼트 위임계약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매니지먼트 위임계약의 주요 조항)



제4조(저작권자와 수임인의 의무)

- ① 저작자는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 위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임인은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④ 수임인은 저작자에게 이 계약에 따라 행사되는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 행사 과정을 항상 공유하여야 하며, 제3자와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제3자의 제안 내용 및 협상의 진행 과정을 저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수임인이 대상 저작물에 대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⑦ 수임인이 이 계약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면서 저작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를 저작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03.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계약조항

매니지먼트 위임계약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웹툰 연재계약의 주요 조항)



제3조(위임의 범위)

저작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의 행사를 수임인에게 이 계약의 기간 동안 위임한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포함 여부 (O 또는 X)	기간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19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수임인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저작권 침해의 구제절차

-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 유형, 매체 형식, 이용 형식, 정가 등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 대상 저작물의 제작, 홍보, 광고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명시해야 한다.



- 1 >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청구를 할 때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 2 > 침해자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어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4 >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즉, 범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저작권법을 위반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정해진 공소시효규정이 적용된다.
- 5 > 저작권자는 침해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하므로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만 한다.
- 6 > 저작권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는 예외이다.

03.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계약조항

공동 저작계약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공동 저작계약의 주요 조항)



제5조(저작물의 이용)

- ① 대상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며, 그 저작권은 A가 __%, B가 __%의 지분으로 소유한다.
-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상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A, B가 공동으로 하여야하며, A, B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지분 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대상 저작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A, B 모두가 해당 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④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은, A, B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서면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저작권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저작권

-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지분을 명시하여 공동저작물의 창작에 각자의 이바지한 바를 명확히 한다.

공동 저작계약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공동 저작계약의 주요 조항)



제9조(저작권의 양도, 상속 등)

- ① A, B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A, B가 사망하는 때에는, 사망자의 저작권 지분은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 등 다른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 ③ A, B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이때 포기한 저작권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 등 다른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제10조(2차적 저작물의 창작)

- ①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행사는 A와 B의 별도 서면 계약에 따른다.
-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 행사는 A와 B의 별도 서면 계약에 따른다.

제7조(저작인격권의 존중과 행사)

- ① A, B는 상대방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 등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호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③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___이 대표하여 행사한다.

제8조(저작권의 표시)

A, B는 대상 저작물의 발행, 전송함에 있어 A, B 모두를 공동저작권자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공동 저작계약

용역의 범위(공동 저작계약의 주요 조항)



제3조(A, B의 업무범위)

- ① A와 B는 대상 저작물 중 다음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1. 대상 저작물의 작화 등 시각적 부분에 대한 창작 업무 :A
 2. 대상 저작물의 스토리, 소재 등 내용 부분에 대한 창작 업무 :B
- ② A와 B는 상대방의 작업 영역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창작한 부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따르도록 강요할 수 없다.
- ③ A와 B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계약의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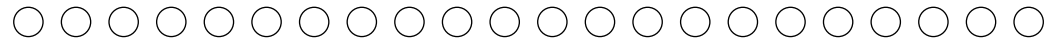
제4조(완전원고의 인도)

- ① A와 B는 공동창작 일정에 맞추어 자신이 담당한 분야의 완전원고를 상대방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기일변경 사실과 기일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이 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A, B는 공동창작이 이 계약의 당사자들 모두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는 과정을 인식하고, 대상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상대방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03.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계약조항

기획만화계약

계약 금액



제8조(대금의 지급)

- ① 발주자는 작가에게 이 계약에 따라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____원을 작가가 지정한 계좌에 금전을 지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계약 즉시 : ____원
20XX. XX.XX : ____원
원고의 최종양도일 : ____원

기획만화계약

계약의 해제(기획만화계약의 주요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

- ① 작가 또는 발주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작가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작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는 별도로 작가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작 가 : 지급받은 대금 및 대상 저작물 창작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원본 일체를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주자에게 작성, 교부한다.
발주자 : 작가로부터 받은 원고 등 자료의 원본 일체를 작가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가에게 작성, 교부한다.
- ④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와는 별도로 작가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작 가 : 대상 저작물 창작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원본 일체를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주자에게 작성, 교부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발주자 : 작가로부터 받은 원고 등 자료의 원본 일체를 작가에게 반환하고, 자료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는 모두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가에게 작성, 교부한다.

기획만화계약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발주자는 그동안 작업한 모든 결과물을 작가에게 반환 또는 파기하도록 하고, 작가 역시 발주자로부터 받은 모든 자료를 반환 또는 파기하도록 하여, 작가의 작업 결과물 또는 발주자의 자료가 제3자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차단한다.
- 계약의 해제만을 인정하는 경우, 계약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발주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도 작가는 작업한 부분에 대해 지급받은 대금까지 발주자에게 모두 돌려줘야 하게 되어 작업에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 작가에게 크게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작가에게 작업한 부분까지의 대금은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다.

기획만화계약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기획만화계약의 주요 조항)



제6조(작가에 대한 존중)

-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작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작화나 구성에 대한 평가절하 등 작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에 "작가 000"의 형식으로 창작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관련 기관과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웹툰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관련 자료는 대학원과 장애인 기관에서 도움을 주셨지만 글과 스토리, 캐릭터 디자인은 모두 제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작성해서 보내준 기획만화계약서 양식을 보았는데 저작권이 기관에 양도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저작권을 보유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 것일까요?

03.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계약조항

기획만화계약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3조(저작권재산권의 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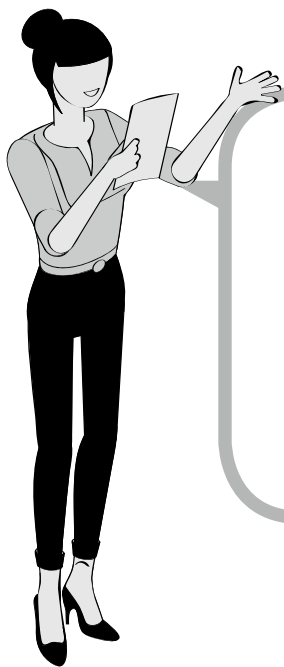
① 작가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

다만,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별도로 정한다.

저작권재산권의 종류	포함 여부 (O 또는 X)	기간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② 작가는 발주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을 양도하는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이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기 TV 리얼리티 예능의 포맷을 웹툰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없을 까요?



구체적인 대본이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출연자 등에 의하여 표출되는 상황을 담아 제작되는 이른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은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외에도,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기획만화계약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기획만화계약의 주요 조항)



제5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①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작가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작가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발주자가 작가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할 때,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작가가 발주자에게 제공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나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03.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계약조항

초상권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 바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퍼블리시티권

“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는 점, 특정인의 성명 등에 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인터넷 게임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면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점,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 동일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고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은 ‘인격 그 자체’가 아니라 ‘인격의 발현으로 인하여 생성된 경제적 이익’이며 퍼블리시티권은 독립된 재산권이므로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권리 행사를 포괄적·개별적으로 위임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의 귀속 주체가 성명이나 초상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전속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가 발생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3가합18880 판결(확정)

03.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계약조항

명예훼손

“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모델이 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예술작품의 창작과 표현 활동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며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판결

기획만화계약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기획만화계약의 주요 조항)



제6조(작가에 대한 존중)

-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작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작화나 구성에 대한 평가절하 등 작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에 “작가 000”의 형식으로 창작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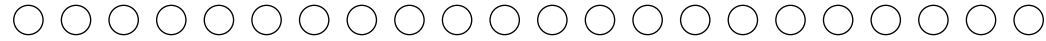


회사의 의뢰를 받아 기획만화를 제작하기로 했고, 이에 기획만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초안을 받아보니 “작가는 발주자의 수정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 요구”라는 문구가 너무 모호한 것 같은데 발주자의 수정 요구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좋을까요?

03.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계약조항

기획만화계약

용역의 범위(기획만화계약의 주요 조항)



제7조(발주자의 수정 요구)

- ① 발주자는 대상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이 계약 체결 당시의 기획 의도나 의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가에게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나 작화 등을 ___일 까지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발주자가 직접 대상 저작물을 수정할 수는 없다.
- ② 발주자가 수정을 요구할 때에는, 작가에게 수정을 요하는 내용을 가능한 명확하게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이 추상적이어서 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작가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발주자의 수정 요구 사항을 해석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한번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작가의 서면 동의 없이 최초 수정 요구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작가는 시나리오 완성, 스케치 완성 등 작품 창작의 각 단계마다 발주자에게 그 시점까지 작가가 제작한 작품의 검수를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작품을 검수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을 경우 수정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검수확인서를 ___일 까지 작가에게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검수확인서가 작성, 교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계약 분쟁 발생 시 대처방법

저작권 귀속,
침해 등
저작권법적 분쟁

임금 및 용역
대가 지불

그 외 일반적
채무불이행 사항

Check Point

- 계약 분쟁 해결의 다양한 방법
- 만화관련종사자 고충상담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인헬프데스크
 - 문화예술계 분쟁조정기구의 활용
 - 불공정행위 관련 분쟁해결지원기구(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고
 - 노동법적 사안일 경우 행정적 구제
 - 고용노동부 신고
 - 사법적 구제
 - 민사 소송 제기 또는 저작권 침해, 임금 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한하여 고소도 가능

Check Point

- 저작권 관련 사안의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저작권 분쟁의 조정 신청이 가능함
 - 소송 계류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이 가능함
 - 조정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므로 조정 중이라도 소송 제기 가능하며 어느 한 쪽 당사자라도 조정에 응하지 않을 시 성립 불가능함
 -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나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 직권으로 조정이 성립함
 - 조정 성립 시 법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에 의한 이행 확보 용이함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는 아닐까?

대가가 지나치게 소액은 아닐까?

권리가 광범위하게 양도되는 건 아닐까?

MG가 지급되는 경우 별도 수익이 작가에게 지급되는가?

Check Point

- 협상력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쉽게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대방은 쉽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의 해제·해지 조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03.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계약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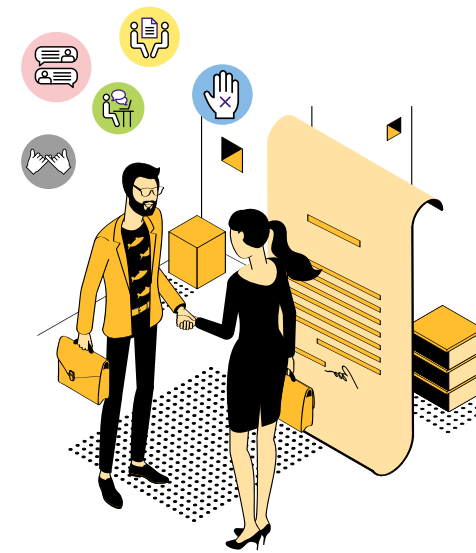
예술인고용보험

Check Point

고용보험법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 ▶ 적용대상(제77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 적용대상임
 -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됨(단기예술인은 제외)
- ▶ 피보험자격 신고(제77조의2 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또는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를 하여야 함
- ▶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요건(제77조의3)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함
- ▶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제77조의4)
 -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함

만화 증서자가 알아야 할 표준계약서 실무



2020년 5월

박경신 : 경희사이버대학교